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Ⅰ. 개정 사유

□ 컨소시엄사업 현장 의견에 따른 규제 완화로 운영 자율성 부여

○ 일반운영비 항목별 집행기준 칸막이 삭제로 예산 집행 자율성 확보

○ 기업수요맞춤형 훈련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 규칙 변경 내용 반영

○ 훈련시설비 및 임차보증금 관련 제한 조항 일부 완화

□ 컨소시엄 훈련 평가, 운영 등의 효율성 제고

○ 공동훈련센터 훈련실적에 대한 벌칙조항 적시성 제고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 세부내역 삭제로 사업 환경 변화 및 정부 정책에 유연성 있는 대응

○ 기업수요맞춤형훈련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심의·의결 사항에서 예외로 적용

○ (별표5) 공동훈련센터 지원제한 등의 세부기준에 「지원·융자 제한」 행정 처분 추가 반영

□ 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 반영에 따른 규칙 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령 제명 변경 적용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적용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 명확화

○ 「공동훈련비」(규정 제19조제3항) 폐지 예정에 따른 규칙 현행화

Ⅱ. 주요 개정 내용

❶ 현장 의견에 따른 규제 완화

1 일반운영비 항목별 집행기준 칸막이 삭제로 운영 자율성 부여(별표1)

○ 항목별 집행기준을 최소화하고 집행기준 칸막이를 삭제해 일반운영비 집행 자율성 제고

【붙임1】 일반운영비 집행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집행 항목(요건)	집행 기준
임차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 수요조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 운영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해 외부 시설을 임차하는 비용	~~.1회당 100만원 이내~~ .숙박비 지원 불가
회의 수당	① 수요조사를 위한 FGI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 수당 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운영위원 의결수당 ③ 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 외부면접위원 수당	~~.10만원이내~~ **.50만원이내** **(다만,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 관련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 불가)**
매식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상 사유로 제공하는 급식비	.1인 3만원 한도 ~~.지원받은 일반운영비의 10% 이내 사용~~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일 또는 평일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자료 인쇄비	① 컨소시엄 협약기업 수요조사에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 ②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인쇄비용 ③ 기타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쇄비용	.실비 인정
훈련생 모집비	① 훈련생 모집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비용. 단, 기념품 제작 불가 ②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	~~.지원받은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사용(다만, 한도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구분	집행 항목(요건)	집행 기준
회계 정산비	① 컨소시엄 사업 회계정산 비용	~~.기관 당 400만원 한도~~ ~~.규정 제19조제3항의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공동훈련센터가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파트너훈련기관 1개당 1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가산~~
교육 훈련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다만, 환급과정, 타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정은 환급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기관당 500만원 한도~~ ~~.다만, '별표 1, 라. 총 지원한도, 2)'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출장 여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관련기관 방문비용 ② 컨소시엄 사업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지출증빙 구비자료 필요)
일반 수용비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②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③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④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기타 잡비용	.홍보용 물품은 1인 5만원 한도(훈련생 지급 불가) ~~.사무용품비는 연간 100만원 한도~~ ~~.홍보용 물품은 연간 300만원 한도~~ ~~(1인 5만원 한도, 훈련생 지급 불가)~~ ~~.다과비는 1인 5,000원 한도~~ ~~.현수막 제작 비용 등 제잡비용 실비 인정~~
사회 보험료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2 기업수요맞춤형훈련 대중소상생·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확대 운영 (제16조, 별표1)

○ 대중소상생,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의 기업수요맞춤형훈련 실적을 훈련규모(연인원)에 포함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산정

- 기업수요맞춤형훈련 **전담공동훈련센터***는 인건비·일반운영비 별도 산정 및 성과평가 별도 실시

*** 전담공동훈련센터 : '20년, '21년도에 선정된 32개 기업수요맞춤형훈련 공동훈련센터**

현 행

제12조(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① 이사장은 매년 별표 7「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지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와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규정 별표 1의 운영비 지원한도의 100분의 10범위(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공동훈련센터는 기존과 별도로 컨소시엄 운영규칙 별표 1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운영비 지원한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장려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장려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1. ~ 3. (생략)

③ ~ ④ (생략)

[별표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관련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1) ① 생략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대규모기업		기본지원	1,000~1,999	2,000~2,999	3,000~3,999	4,000~4,999	5,000~5,999
그 외 기관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2,499	2,500~2,999
인건비	비면제 기관*	8천만원	1억2천만원	1억6천만원	2억원	2억4천만원	2억8천만원
	면제 기관**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2억5천만원	3억원	3억5천만원
최소인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개 정 안

제12조(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① ..... (삭제)에 따라 .....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전담**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는.....

②.....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전담** 공동훈련센터는.....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표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관련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1) ① 현행과 같음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대규모기업		기본지원	1,000~1,999	2,000~2,999	3,000~3,999	4,000~4,999	5,000~5,999
그 외 기관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2,499	2,500~2,999
인건비	비면제 기관*	8천만원	1억2천만원	1억6천만원	2억원	2억4천만원	2억8천만원
	면제 기관**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2억5천만원	3억원	3억5천만원
최소인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 기업수요맞춤형훈련 전담 공동훈련센터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⑥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지원된 인건비와 별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⑥ 기업수요맞춤형훈련 **전담 공동훈련센터**는……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전담자 인건비 지원기준 < 기본 지원 > · 대응투자 비면제기관 : 4천만원 이내 · 대응투자 면제기관 : 5천만원 이내 · 최소인원 : 1인 ※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시 8천만원 이내(면제기관 : 2인) ①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규모 연인원 100명 이상 운영 ② 재직자 과정 훈련규모 연인원 200명 이상 운영 ③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규모 이상) 운영	**기업수요맞춤형훈련 전담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인건비 지원기준** < 기본 지원 > · 대응투자 비면제기관 : 4천만원 이내 · 대응투자 면제기관 : 5천만원 이내 · 최소인원 : 1인 ※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시 8천만원 이내(면제기관 : 2인) ①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규모 연인원 100명 이상 운영 ② 재직자 과정 훈련규모 연인원 200명 이상 운영 ③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규모 이상) 운영
2) 일반운영비	2) 일반운영비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구분 / 훈련 규모(연인원 / 계획인원 / 기본 / 500~999 / 1,000~1,499 / 1,500~1,999 / 2,000~2,499 지원액 / 2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	구분 / 훈련 규모(연인원, 명) / 계획인원 / 기본 / 500~999 / 1,000~1,499 / 1,500~1,999 / 2,000~2,499 지원액 / 2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
※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 기업수요맞춤형훈련 전담 공동훈련센터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인원은 제외**
(2)~(6) 생략	(2)~(6) (현행과 같음)

3 훈련시설비 관련 제한 조항 일부 완화(별표1)

○ **컨소시엄훈련 전용 건축물**일 경우, 원활한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엘리베이터, 야외휴게시설 등) 증축, 개축, 확장 등이 가능하도록 완화 조치

○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공동훈련센터**의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제한 조항을 일부 완화하여 컨소시엄 훈련 독려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관련 가. 운영비 나. 훈련시설비 및 장비비 2) 훈련시설비	**[별표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관련 가. 운영비 나. 훈련시설비 및 장비비 2) 훈련시설비
지원 가능항목 / 지급 불인정 항목 .생략 / .생략 .생략 / .생략 .**(신설)**	지원 가능항목 / 지급 불인정 항목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컨소시엄훈련 전용 건축물일 경우,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에 필요한 비용**
.생략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	.현행과 같음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포함 최대 지원 기간을 9년으로 할 수 있음) 1. (삭 제) 2. (삭 제)

❷ 컨소시엄 훈련 평가, 운영 등 효율성 제고

4 공동훈련센터 훈련 실적에 따른 벌칙 조항 적시성 제고(별표1)

○ 공동훈련센터 목표달성률 30% 미만 성과 저조기관 벌칙 단서의 인건비 감액 적용 시점이 모호함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하여 벌칙 조항 적시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관련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1) ①~⑥ : 생략 ⑦ ①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매년도 9월말 기준으로 목표 훈련인원 대비 수료인원(이하 목표달성률)이 30% 미만인 성과저조기관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해 연도 인건비를 최대 30%까지 감액할 수 있다. 단, 연내 목표달성률이 30%이상 달성시 인건비 감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관련 가. 운영비 1) 전담자 인건비 (1) ①~⑥ : 현행과 같음 ⑦ ①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매년도 8월 말 기준으로 목표 훈련인원 대비 수료인원(이하 목표달성률)이 30% 미만인 성과저조기관의 경우, 인건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11월말 기준으로 당해연도 목표달성률이 30% 미만일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해 연도 인건비를 최대 30%까지 감액할 수 있다.

5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관련 지표 세부 내역 삭제(별표7)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있는 대응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별표7) 삭제

~~[별표 7] <개정 2020.11.12.>~~ 삭제

~~<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지표(제16조제1항 관련) >~~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문항	방법
		향상	향상+채용예정자		
계		100	100	가·감점 제외	
사업투입(10)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	3	3	독립된 사업 전담조직 구성여부 및 전담인력의 역할 분담 등 체계적 조직운영에 대한 노력	정성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5	5	전담자 교육훈련 참여 시간	정량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2	2	활용계획에 따라 훈련시설.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노력	정성
사업운영(30)	수요조사 연계 및 과정설계	9	9	협약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정성
	협약기업 확보 및 지원	5	5	목표 달성을 위한 협약기업 관리 및 홍보 노력	정성
	과정운영	5	5	훈련과정의 연간 실시 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	정성
	과정평가 활용	3	3	학습자 평가 수행여부 및 활용 노력	정성
	훈련시설.장비 활용성과	8	8	시설 및 장비(자체 보유 포함) 활용률	정량
사업결과(60)	협약기업 훈련참여 및 확산	3	3	협약기업 확보율	정량
		3	3	협약기업 유지율	정량
		2	2	협약기업 참여율	정량
		3	3	비협력업체(비회원사) 또는 소기업(50인 미만)의 협약 참여율	정량
	훈련 성과 및 달성률	21	15	목표 대비 훈련실적 달성률(연인원)	정량
		15	6	수료율	정량
		-	15(9/6)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취업률/고용유지율)	정량
		10	10	참여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정량
	사후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	3	3	훈련 종료 후 협약기업(훈련생)의 피드백 반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정성
가점(7)	훈련실적 기여도	3	3	훈련실적 달성을 위한 조직 기여도	정량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2	2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실적	정성
	정부정책 부합도	2	2	정부정책 중점 사업 기여도	정량
감점(2)	규정·규칙 위반	2	2	운영규정·규칙의 절차 등을 위반하여 별표5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관	정성

6 기업수요맞춤형훈련 프로그램개발비 「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심의·의결 예외 적용(제33조)

○ 기업수요맞춤형훈련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심의·의결 사항에 매번 포함*되어 사업계획 심사 후 심의·의결 절차에 따른 행정 지연이 발생됨에 따라,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로, 기업수요맞춤형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는 협약기업당 3천만원 이내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업수요맞춤형훈련 지원에 대한 지원금 사용을 명시화하고 단서 조항으로 프로그램개발비 승인을 심의·의결사항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신설**	**제33조(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기업수요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에 직무분석 및 과정개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훈련시설비 및 장비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단, 프로그램개발비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훈련과정운영비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일부 수정(별표1)

○ 훈련과정운영비 중 「기타훈련비용」 지급기준을 보완하여 혼용되어 사용되던 시설·장비 관리유지비 항목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컨소시엄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별표1]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훈련비용) 관련 나. 2) 훈련비용관련 (2) 지원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별표1]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훈련비용) 관련** 나. 2) 훈련비용관련 (2) 지원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구분 / **지원대상(요건)** 생략 / 생략 **기타훈련비용** / ① 생략 ② ……, **신설** 생략 / 생략	**구분** / **지원대상(요건)**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기타훈련비용** / ① 현행과 같음 ② ……. **단, 시설·장비비 항목에서 지원받는 유지보수비 관련 금액 제외**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8 「지원·융자제한」 행정 처분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추가 반영(별표5)

○ [별표5] 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분류 기준에 "훈련부정 관련"을 "행정처분 관련"으로 수정하고 「지원·융자제한」 처분 내용을 추가하여 적확한 업무 처리

현 행	개 정 안
[별표5] <공동훈련센터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 **1. 훈련부정 관련**	**[별표5] <공동훈련센터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 1. 행정처분 ……
구분 / **조치내용** 가.~나. 생략 / 생략 **다. 신설** / **다. "가","나", 중 협약기업에 대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생략 **라. 생략** / 생략	**구분** / **조치내용** 가.~나. 생략 / 생략 **다. 지원·융자제한** / • 지원·융자제한 기간 중 지원금(인건비 포함) 지원 제한 • 지원·융자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존 구축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감가상각분 환수 • 기존 사업계획 반려 및 재수립 • 1년 이상 지원·융자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라.** …… **"가", "나","다",중**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❸ 법령 개정에 따른 규칙 개정

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령 제명 변경 적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2.2.18.개정)에 따른 운영 규칙 내 법령 인용 조문 변경 필요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조(목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9조(협약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① ~ ③ (생략) ④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의 재직근로자 등을 위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집체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제29조(협약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⑤ (현행과 같음) ⑥.....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제척사유 구체화(제6조의2)

○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공공부문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요구 증대로 심의위원회 제척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 강화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안건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이 공동훈련센터 임직원인 경우 2. (생략) 3. (신설) 4. (신설) 5. (신설) 6. (신설) ② ~ ③ (생 략)	**제6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 (삭 제) ..... 1. 심의위원이 최근 3년 이내 공동훈련센터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심의위원이 공동훈련센터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공동훈련센터에서 의뢰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5. 최근 3년 이내 당해 위원으로 활동관련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6.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❹ 행정규칙(고시,훈령) 등에 따른 규칙 개정

⑪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84호) 적용

○ 보조금과 부담금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해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동훈련센터의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월 1회 점검하도록 관련 근거 구체화 (제18조, 제45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e나라도움에 등재·관리하도록 할 근거 마련(제38조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공동훈련센터는 부담금을 컨소시엄 사업전용 통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제18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현 행	개 정 안
집행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④~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정산서류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23조에 따라 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정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사용 실적 내역을 이사장과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정산을 실시할 경우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정산관련 증빙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45조(정산서류 등)** ①…… …… 월 1회 이상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 … … … … … … … … … …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38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①~④ (생략) **(신 설)**	**제38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공동훈련센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35조에 따라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재산 처분제한 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2 「공동훈련비」(규정 제19조제3항 관련) 폐지 예정에 따른 규칙 현행화 (제17조,제18조,제25조,별표1)

○ 운영규정에서 폐지 예정인 공동훈련비* 방식을 삭제하고 규칙을 현행화하여 수정 보완 필요

*공동훈련비 : 협약기업이 사업주지원한도액(고보기금납부액의 240%) 중 일정비율을 컨소시엄사업지로 사전 책정하여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공동훈련비 용어 및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단가 및 훈련과정운영비로 용어를 통일하여 훈련비 관련 내용 재정립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동훈련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① (생략) ② 공동훈련센터 등이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기업과 업무매뉴얼 제4호 서식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및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 대한 협약기업이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비용 한도액 차감에 대한 동의서를 체결하여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훈련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 ……(삭 제)…… ……
제18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③ (생략) ④ (생략) 1. (생략) 2. 훈련실시 이전에 규정 제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훈련비용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⑤~⑦ (생략)	**제18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삭 제)…… …… ⑤~⑦ (현행과 같음)
제25조(훈련비용의 신청 및 지원) ① 이사장은 규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및 별표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생략) 1.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업과 약정을 하여 공동훈련비를 적용하는 공동훈련센터 2.~3. (생략) ② (생략)	**제25조(훈련비용의 신청 및 지원)** ① ……(삭 제) …… …… …… …… …… 1. (삭 제)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1]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훈련비용) 관련 **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1) (생략) (2) 규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나. 공동훈련비 방식'의 '2) 훈련비 관련'의 '(2)'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생략)	[별표1]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훈련비용) 관련 **가.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1) (현행과 같음) (2) ……나. 지원단가 방식 …… …… (3) (현행과 같음)
[별표1]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1]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훈련비용) 관련	제19조(훈련비용) 관련
나. 공동훈련비 방식	나. 지원단가 방식
1) 약정비율 관련	1) (삭 제)
(1)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원한도액(이하 "사업주지원한도액"이라 한다)의 일정 비율을 협약기업과 약정(이하 "약정비율"이라 한다)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 제)
① 약정비율은 사업주지원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협약기업의 사업주지원한도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약정비율은 원칙적으로 모든 협약기업에 동일한 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협약기업에 동일한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지원한도액이 고액이어서 단일 약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한 사업주지원한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약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③ (삭 제)
(2) 약정비율은 규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확정되어야 하며,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2) (삭 제)
①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 : 공동훈련센터가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시 약정한 비율을 적용하되 해당 기업의 사업주지원한도액의 잔액이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만인 경우 사업주지원한도액의 잔여액을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본다. ②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해지한 기업 : 사업연도 중에 협약을 해지한 기업의 경우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업연도 중 협약기업이 폐업 등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고용보험관계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1) 약정비율 관련'에서 정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감하지 않는다.	①~③ (삭 제)
2) 훈련비용 관련	**2) 훈련비용 관련**
(1)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약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공동훈련비"이라 한다)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비 산정 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공동훈련센터는 식비, 숙식비, 훈련비 등 훈련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훈련비용을(이하 "훈련과정운영비"이라 한다) 지원받을 수 있다. .....(삭 제).....
(2) 공동훈련비의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단가가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다.	**(2) 훈련과정운영비의** .....
① 공동훈련비에서 지원받은 비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① 훈련과정운영비에서 .....
② 공동훈련비의 경우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선 지급한 공동훈련비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② 훈련과정운영비.....훈련과정운영비.....
③ 공동훈련비 방식의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실시 인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 예산 잔액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훈련과정운영비 .....
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 제4항제6호의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다. (현행과 같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삭 제) 나. 지원단가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⑤ 생략	③~⑤ (현행과 같음)
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 제4항제7호,제8호,제9호의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라. (현행과 같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삭 제) 나. 지원단가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바. 공통역량 직무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바. (현행과 같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나. 공동훈련비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②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및 식비와 숙식비는 앞의 (삭 제) 나. 지원단가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